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업무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근속승진기간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한 자를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 같은 영 제33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VI.승진임용 2. 근속승진(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르면 근속승진은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제한사유 해당자,

임용령 별표4의 승진임용배수 범위(이 경우 근속승진가능자수를 결원수로 간주) 미포함자,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자는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하고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여야 하며

6급으로 근속승진의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연도의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2016. 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상반기 6급이하 공무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는데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하지 않고 근속승진 대상자를 먼저 결정하여 배제하였으며

시설(○○○○) 7급의 경우 당시 인사위원회에 제공된 6급 승진후보자 명부상 1순위자인 ○○○는 근속승진 대상이 된다는 사유로, 2순위자인 ○○○, 3순위자인 ○○○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근속 승진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일반승진 적격여부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채 승진후보자 명부 4순위 부터 30순위 26인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여 승진임용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기술직렬 7급이하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구·군에서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음에도

2016. 1. 13.기준 ○○구, ○○구, ○○○구, ○○군의 시설(○○○○) 7급을 대상으로 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검토한 결과, 6급으로 근속승진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해당 구·군에는 근속승진대상자가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2016. 1. 14. 인사위원회 심의일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5명의 20%인 1명만 근속승진이 가능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1위인 ○○○를 시 본청에서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더불어 2016. 2. 3.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2순위자인 ○○○을 ○○구로, 3순위자인 ○○○을 ○○○구로, 15순위자인 ○○○을 ○○군으로 각각 2016. 1. 27. 전보 조치한 후 근속승진임용을 하였으나,

15순위자인 ○○○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질병휴직기간(2008. 3. 3. ~12. 31, 10월)을 제외해야 함에도 부당하게 재직기간에 포함시킨 결과 결국 근속승진기간 미충족된 자가 근속승진임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속승진기간 미충족으로 인하여 근속승진임용 제외자에 해당되어 당초 2016. 2. 3.자 승진임용을 2017. 4. 6.취소(○○군 ○○○○과-0000)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 기장군수는

[주의] 앞으로 근속승진을 위한 인사 운영 시 근속 승진 제외 대상자가 포함되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